

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

•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7일	
① 건축주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	전자우편 송달동의	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.			
	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		
		건축주 (서명 또는 인)			
	전자우편 주소 @				
② 설계자	성명 (서명 또는 인)		자격번호		
	사무소명		신고번호		
	사무소주소 (전화번호:)				
③ 공사 개요	대지위치				
	지역지구		층 수	지하 지상	
	대지면적	m²	건축면적	m²	
	건축연면적		구 조		
	용 도		건축허가일 /허가번호		

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건축주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근거법규	
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	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. 2.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으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유의사항	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건축주가 건설사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)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	
처리절차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처리기관 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 건축허가부서 등)
→ 검토	→ 감리자 지정
→	신청인에게 통보